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11호

발행일: 2025. 12. 12. (금)

제429회 국회(정기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 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 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라.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 열린 제12차 본회의, 11월 27일 열린 제13차 본회의, 12월 2일~3일 열린 제14차 및 제15차 본회의에서 각각 54건, 7건, 95건으로 모두 15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12차~제15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통시장 주변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제한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4)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6)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2일, 12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5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등15인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등16인
8	정무위원회(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기획재정위원회(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기획재정위원회(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1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1인
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5인
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4인
30	교육위원회(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31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의원등23인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등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0인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등10인
35	국방위원회(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6	행정안전위원회(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0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26인
4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윤건영의원등45인
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등11인
4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등13인
4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48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9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5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5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5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6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6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6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0인
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0인
6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등19인
6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10인
6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등17인
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6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6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7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8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8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등10인
8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등11인
8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의원등13인
8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등12인
8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등17인
8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8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의원등11인
8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2	보건복지위원회(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6	보건복지위원회(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9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등10인
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1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등10인
1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1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0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등13인
10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1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등10인
10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3인
10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3인
109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의원등12인
1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등10인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3인
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115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1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7	국토교통위원회(29)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등11인
1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2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1인
1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 윤영석의원등56인
13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등12인
1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1인
13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1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등10인
1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등17인
1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0인
13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등10인
1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4인
1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10인
140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등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41	국토교통위원회(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1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1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0인
14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10인
14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2인
1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11인
14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14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1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150	성평등가족위원회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15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등11인
15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15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등22인
1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등10인
15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등22인
15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등15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개요

석탄 발전은 오랫동안 국가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탈석탄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의 급격한 쇠퇴, 일자리 상실, 지역경제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환경·경관 문제를 둘러싼 주민 수용성 갈등이 심화되며,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전환 과정 전반에 사회적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갈등은 단순히 에너지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산업의 등장,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탈탄소화 전략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갈등 예방·조정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와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일련의 법률을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등 목적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과 경쟁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u>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2025-12-02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1951년 6월 29일에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u>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u>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025-11-27 (원안가결)
3		<u>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u>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2025-12-02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산업부)

□ 과제목표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 주요내용

-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용자 등 지원
 - *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제제조(자동차 부품), 제사용(배터리), 제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제생원료인증제 마련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온실가스 감축】

- (감축 로드맵)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제출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31~49년)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4기(26~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유인 제고
- (탄소크레딧)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발표, 25.下)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탄소시장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신뢰성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탄소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 위한 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 구축(28년)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지속 추진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5. 1. 14.)

□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 업계 자율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하고 고부가·친환경소재 투자 강화('2530 R&D 로드맵' 수립, '25.上)

철강

-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가동('25.1~), TF 논의사항을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上)
 - * 통상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 투자 등
-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26~'30, 약 9천억원) 예타 마무리('25.上)

출처: 2025 정부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참고 자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안: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2025. 11.

이철규 의원안: 광부의 날 지정 2025. 11.

[\(석탄시대를 지나 미래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의 활용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발표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의원 정책자료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22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참고자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4-08 2024. 12. 30.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산업, 에너지 구조를 변화시키며 글로벌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기술 개발 및 상용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전략 수립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산업전략의 핵심은 청정기술 개발 및 제조업 기반 강화와 더불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구조 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조업 6위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러한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117호 2024. 12. 23.

글로벌 탄소중립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제조업 기반 회복을 위해 산업전략 수립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 제조업 3~4위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 및 법제화 추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자원 배분 체계 개선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이다.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및지역주민대상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57호 2022. 11. 14.

본 연구는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탈석탄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병행 필요,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와 인식 정도가 다르므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일자리 문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며,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탈석탄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

개요

새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목표로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국내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낮은 기업가치 평가, 배당성향의 국제 비교상 낮은 수준, 투자자 저변의 위축)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5-8호 주주가치 제고](#), [제2022-11호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025-3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제2025-6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등](#) 참조). 최근 국회는 조세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전략, 투자자 세부담 구조, 자본시장 규율체제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자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025-12-02 (원안가결)

정책 동향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중시 수요기반 확충】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탁원·거래소 등 참여
-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퇴직연금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現 30인 이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조정)

1. '25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기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 4.

박수영 의원안: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스피 4000 시대, '코리아 트러스트'로 가는 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5. 8. 20.

- ☐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정책의 원인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과세체계 문제점이 지적됨
- ☐ 고배당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되, 중장기적관점에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5. 3. 17.

1. 국내 상장기업 가치 제고 방안(밸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장기적·안정적인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으나, 여유자금 감소로 기업 투자가 제약될 소지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G20 회원국 중 16개국과 비교하여 파악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 기업가치는 성장성과 안정성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배구조 및 정부규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취약하며, 유동주식 비중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배당, 자사주매입)이 낮았으나, 현금성자산 보유 역시 활발한 자본적 지출(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①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주주환원은 확대되고 현금성자산 보유규모는 축소되었다.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지배주주 혹은 경영자 재량으로 보다 쉽게 사용 가능한 현금보유 유인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②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인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는 주주환원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며, 주주보호가 취약한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기업가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룹 · 산업별로 추정한 결과, ③ 주주보호 취약그룹에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고 ④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주주환원의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위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기업의 자본적지출은 주주보호 또는 주주환원 정도와 관계없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5.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주보호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주주환원이 생산적 투자기회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보다 자본적지출을 통한 수익성 · 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개요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영상 · 전화 등으로 의사의 진찰 ·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 방식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화 · 화상 기반의 초진 및 재진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했고, 국민의 접근성 향상 ·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안전성 평가 · 의료전달체계 영향 등 제도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팬데믹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의료계 · 환자단체 · IT업계 · 정부 간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일정 기간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었고, 2023~2024년에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안전성 및 의료의 질 확보, 의료전달체계와 동네의원 역할, 의료 접근성 제고, 플랫폼 규제 및 책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지는데, 이와 같은 쟁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범위와 방식, 허용 요건 설정, 보험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입법과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접근성 간 균형을 고려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요건 등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u>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2025-12-02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복지부)

□ 과제목표

-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23) 고혈압 조절률 60.9%, 당뇨병 조절률 41.2%

** ('15) 70.6세 → ('21) 70.5세로 정체

□ 주요내용

-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 * 공공의료체계(보건의료원 등) 중심 모형, 지자체 중심 의료·돌봄 연계 특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 특화 모형 등 지역·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형 설계
-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 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지역보건 의료기관 기능·인력 개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적극 활성화
- (비대면진료 확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자살예방서비스* 대폭 확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확대(12개 시도→전국),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확대(9개 시도→전국) 등
- 마약·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회복체계 강화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지역 재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력제고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개편*
 - * 예)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의 정주 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등
-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 강화*
 - * 혁신단과대학(원·석사과정 연계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신설, 임무 중심 R&D프로젝트 지원 등
- 국적선사에 쉼빙선 건조, 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하고, 북극 연안국*과 해운협력도 강화
 - * 미국,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해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역별 지원예산 자동화, 지역고용거버넌스 개편 등
-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및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5. 1. 10.)

②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 (비대면진료) 의료 접근성 확대 및 안정적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의료법」 개정)
- (간호인력)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제도화 차질없이 준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성과보상 강화 추진
 - * ('24) 교육제공기관 수도권 1개소(500명, 5억원) → ('25) 권역별 확대(1,000명, 10억원)
 - ** 교육전담간호사(160명상당 1명→100명상당 1명), 대체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 (규제개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현장 규제개선
 - (특수의료장비)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25.1.)
 - * 연구용역 결과(~25.1)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본인확인) 장기간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중증·희귀질환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사유 확대*
 - * (現) 응급환자·임산부 등 9개 사유 → (改) 중증·희귀질환자 추가

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누리집

참고 자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2025. 11.

최보윤 의원안: 비대면진료 확대 2025. 8.

우재준 의원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2025. 8.

전진숙 의원안: 비대면진료 제도화 2025. 8.

서영석 의원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2025. 9.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비대면 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4. 12. 26.

- ☐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임
 -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여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기법과 이중차이분석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정책의 효과를분석하였음
 - 고혈압 환자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처방지속군이 유의하게 늘어나 복약순응도에 효율적임
 - 다만 필수 검사를 이행한 집단의 비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이후 감소하였는데, 검사를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개입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어디서나 의료진이 관리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함
 - 비대면으로 허용가능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부가적인 효과까지 지속될 수 있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4. 1. 3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약사단체는 비대면 처방 및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며, 산업계는 약 배송 불허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괄등재제도의 형태를 도입하여 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표준진료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효과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개요

과소화 및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및 교통사각 지역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가 운영 중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입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버스·택시 등의 교통서비스 부족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승용차에 치중된 이동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입법·정책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교통서비스 등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법안은 권한의 위임 근거만 마련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하는 등 내용적 한계가 있어 ‘지역 단위 맞춤형 교통행정의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한 정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현행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025-11-13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국토부)

□ 과제목표

- 철도·도로·항공 등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

□ 주요내용

- (전국 광역철도 확충)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 (철도·고속도로망 구축) 전국 거점 연결 '4x4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 *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현재 39%)로 확대
 -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 적기 개통으로 '10x10 고속도로망' 구축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지하고속도로 선도사업 착공
-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중장거리 LCC 운항 확대
 - *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제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등
- (대도시권 혼잡 완화) 대도시 내 도시철도 및 BRT·광역버스 확대
 - 신도시 등 준공예정 광역버스 노선 추가, 주요거점 환승센터 확충
-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 원하는 시간·장소 이용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시외버스 등 필수노선 도입 및 물류취약지역 지원 강화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참고 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 8.

윤재옥 의원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및 위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30.

이 연구에서는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교통여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현황과 관련 사업 동향을 조사하고,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통행 취약성 분석과 개선전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2025. 3. 3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중교통체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보완과 함께 PM과 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